

[의사일정 제 항]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5. 6. .

제 출 자 : 동해시장

1. 제안이유

2025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동해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 총 1건

- 취득(1건), 처분(0건)

〈 취득 재산 〉

○ 토지 : 7필지 / 총 면적 769,306㎡

3.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재산

(단위 : m², 백만원)

사 업 명 (주요 안건)	방법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담당 부서
			수량	면적(m ²)	기준가격	
합 계	취득	토지	7	769,306	613	
		건물	-	-	-	
		기타	-	-	-	
	처분	토지	-	-	-	
		건물	-	-	-	
		기타	-	-	-	
시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입	취득	토지	7	769,306	613	녹지과
		건물	-	-	-	
		기타	-	-	-	

1

사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입 [녹지과]

1. 대상 재산현황

○ 취득 재산

구분	위치	규모	비고
토지	이로동 산302 외 6필지	769,306㎡	총 7필지

2. 재산의 취득사유 및 용도

○ 취득사유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국산목재 사용확대 등 지자체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유림 매입.

○ 용도

- 국산목재 생산을 위한 경제림단지 조성 및 향후 산림휴양시설 부지로 활용.

3. 사업개요

○ 위 치 : 동해시 이로동 산302번지 외 6필지

○ 규 모 : 769,306㎡(총 7필지)

(단위 : ㎡, 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취득면적 (㎡)	공시지가	기준가격 (공시지가*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합계	7필지			769,423	769,306		613,335,657
1	이로동	산302	임	38,050	38,050	671	25,531,550
2	이로동	산360	임	730,181	730,181	797	581,954,257
3	이로동	1088-6	도	308	296	5,080	1,503,680
4	이로동	1099-5	도	104	94	5,080	477,520
5	이로동	1099-6	도	217	157	5,080	797,560
6	이로동	1100-3	도	153	143	5,080	726,440
7	이로동	1101-5	잡	410	385	6,090	2,344,650

- 사업기간 : 2025. 6. ~ 12.
- 기준가격 : 613백만원(공시지가 기준)
 - 이로동 산302 약식감정가 : 45백만원
 - 이로동 산360 외 5필지 최저매각가격(제4회) : 758백만원
 - ※ 최초 법원 감정가 : 2,212백만원

4. 계약방법

- 협의(이로동 산302) 및 법원 경매 참여(이로동 산360 외 5필지)

5. 향후 추진계획

- (2025. 6.)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수(이로동 산302) 추진
- (2025. 7.) 법원 경매(이로동 산360 외 5필지) 참여

6. 기대효과

- 사유림과 연접한 대면적의 사유림을 확보하여 경제림단지 조성 및 향후 산림휴양시설 부지로 활용

7. 참고자료

- 위치도(이로동 산302번지, 산360번지, 1088-6 외 4필지)

참고자료 1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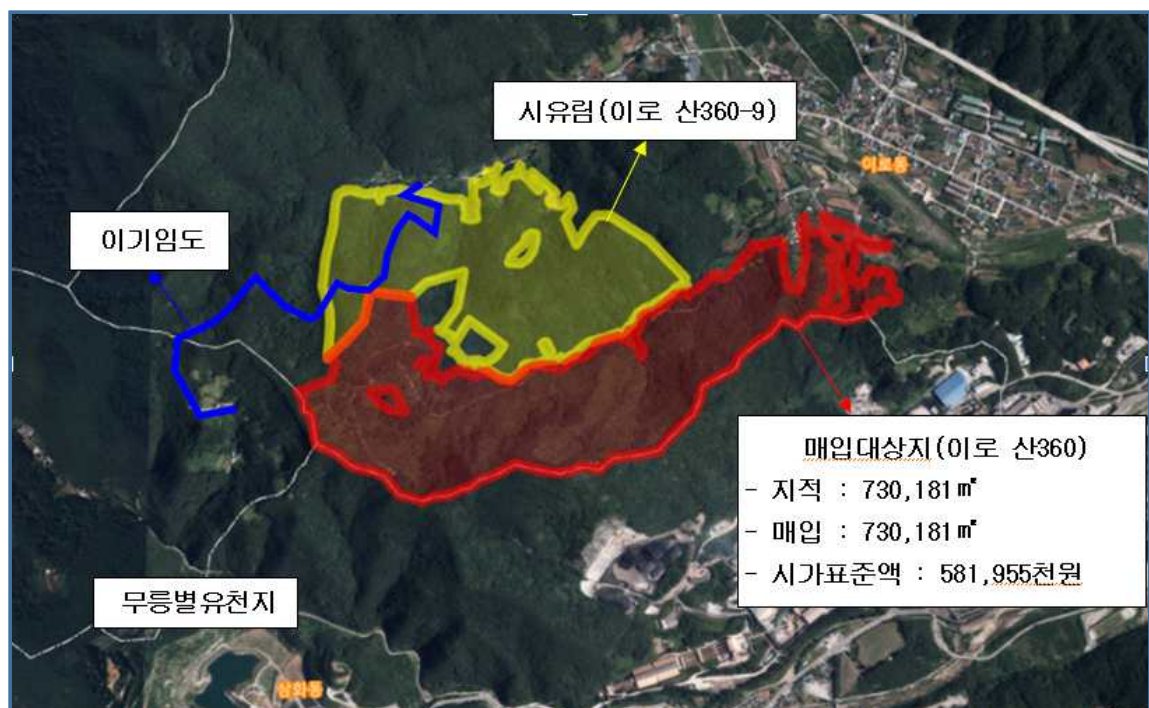
위 치 도

이로동 산302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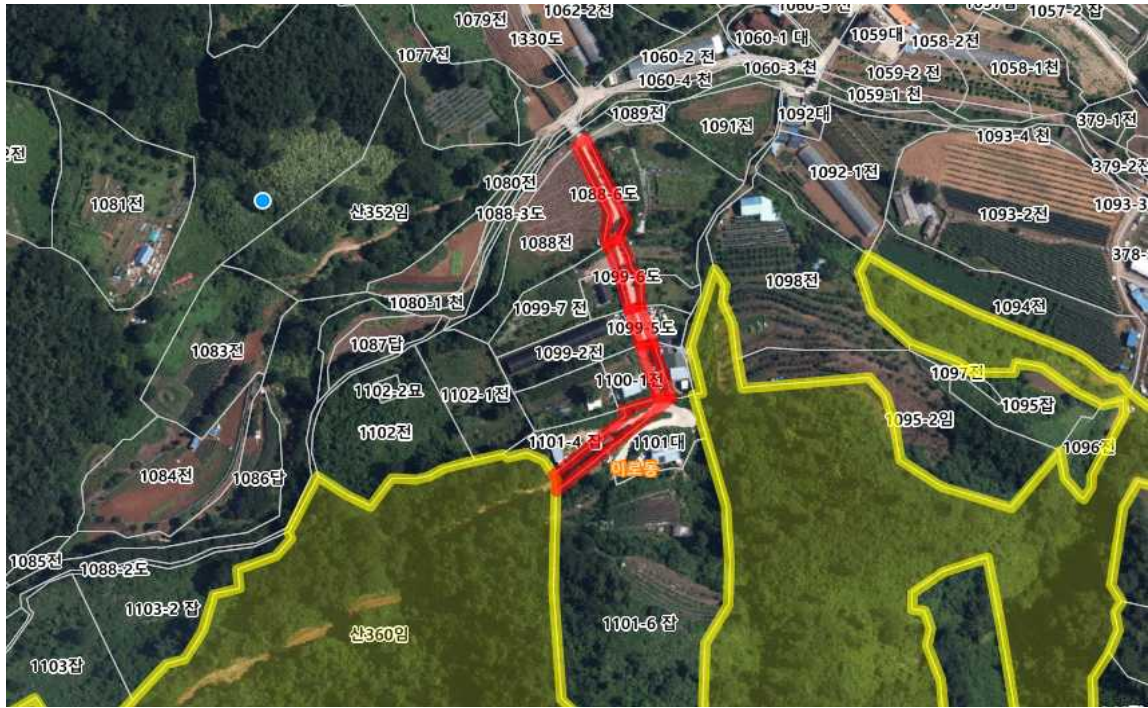


위치도

이로동 산360번지



이로동 1088-6 외 4필지



소관 부서		녹지과
입 안 자	직위 성명	녹지과장 심광진
	직위 성명(전화)	산림경영팀장 정인화(8493)

4. 관련법령

법령	조문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다음 회계년도 시작 40일전까지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의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 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총괄 부서		회계과
입 안 자	과장 성명	회계과장 전춘미
	팀장 성명(전화)	공유재산팀장 정미영(2430)